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태용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14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 장태용,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ㆍ석, 박춘선, 서상열,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숙자, 이종배, 이종환,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홍국표, 황철규 의원(38명)

1. 제안이유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함(안 제8조제5항).

나.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제10조).

라. 위원회의 정기ㆍ수시 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마. 위원회 운영에 관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참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동정책 담당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부서장을 간사로 담당팀장을 서기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신 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제12조 (생 략)	제9조·제10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삭 제>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세칙)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제17조 (생 략)	제14조·제15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